■ 국회인사규칙 [별표 4의3]<신설 1994.7.20>

겸임예정직급기준표

		1급·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연구직렬 공무원		연구관	연구관	연구관	연구관				
교육공무원	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(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)	교수	교수·부교수	부교수·조교수	조교수·전임강사(2년이상)	전임강사			
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·단체		이사(3년이상)	이사	부장	과장(차장)	계장(대리)	평사원(3년이상)	평사원	평사원